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3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정을호·이해식·이훈기

강유정 · 강득구 · 김영배

이연희 • 강훈식 • 박해철

임호선 • 박수현 • 문진석

송재봉 · 김문수 · 전진숙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.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평가"를 "평가·해산"으로 한다.

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) 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"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"이라 한다)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요청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 복지법인의 회계감사와 운영상황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 가 첨부된 해산인가신청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

산할 경우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반환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반환재산 외의 잔여재산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27조에도 불구하고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- 1. 제2항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
- 2.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
- 3.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
- ⑥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, 제5항에 따른 편입·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 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자

- 7의2.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
- 7의3. 제43조의3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효기간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	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
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	
도 및 어린이집 <u>평가</u> 에 관한	<u>평가·해산</u>
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	
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	
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	
도・특별자치도(이하 "시・도"	
라 한다) 및 시・군・구(자치구	
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	
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	<u>-</u>
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	
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	
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	
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	
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	
•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	
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	
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・운
	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
	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

례) 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"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"이라 한다)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수 있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요청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와 운 영상황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첨부된 해산인가 신청서를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목적사업을

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 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에 즉시 반환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반환재산 외의 잔여재산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- 1. 제2항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
- 2.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
- 3.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

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

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하여

 편입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

 지급
- ⑥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, 제5항에 따른 편입·퇴직위로금 지급 등에

제54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7. (생 략) <신 설>

관하여	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
심의를	거쳐야 한다.

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2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자
- ③ (현행과 같음)

4	 	

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

	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
	허위로 제출한 자
<u> <신 설></u>	<u>7</u> 의3. 제43조의3제5항 각 호에
	서 정한 잔여재산 처리방법을
	위반한 자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